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제출일자 : 2019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19년 7월 8일

2.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관련 사항을 본 조례에 편입하여 산업단지 관련 회의기구 근거 조례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문신설(안 제5장) :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관련 내용 추가
- 기타정비(안 제2조에서 제4조, 제4조의2, 제10조, 제5장에서 제6장)
: 약칭 및 용어 정비, 조항번호 변경 등
- 부칙(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4. 검토의견

□ 개정취지

- 산업단지 관련 조례를 정비*하면서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관련 사항을 본 조례로 편입(이관)해 산업단지 관련 회의기구 설치 근거를 일원화하고 또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 개정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개정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 - 폐지

□ 적법성 여부

- 산업단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 먼저,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는 산업단지 관련 회의기구를 보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입지심의회’와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

※ 산단회의 기구는 상위법령에서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단지 관련 위원회 현황 》

구 분	산업입지심의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
설치근거	산업입지법 제3조제3항	산단특례법 제6조제1항	산업입지법 제39조의20
성 격	자문	심의	협의·조정
구 성	15명 이내	30명 이내	30명 이내
위 원 장	위원 중 호선	시장	위원 중 호선
주요기능	·산업용지 공급 및 분양 ·입주자격기준 ·산단 재생	·계획 수립·승인·변경 ·행정기관 이견 조정	·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재생사업 관련 이해 관계자 의견조정
관련조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 충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 충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
비 고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대행	-	-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정의)**는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 (제5장)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용어를 정의한 것이며,
- **안 제5장(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은 산업단지 관련 회의기구의 하나인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당초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노후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 (2020.1.1. 폐지예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관련 회의기구의 설치 근거를 일원화하기 위해 이를 본 조례로 이관(신설)하려는 것임.

※ 신설(이관) 주요내용

- 안 제16조(설립) :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 안 제17조(구성) : 협의회 구성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안 제18조(위원의 해촉) : 해촉을 위한 근거
- 안 제19조(위원장의 직무) : 협의회 대표 및 업무총괄
- 안 제20조(회의) :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 안 제21조(간사) : 간사에 관한 사항
- 안 제22조(운영세칙) :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항은 장 및 조항(제5장,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신설(추가)에 따라 장 및 조항번호를 변경하고,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법령명을 약칭*으로 사용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법률」 → 중복시 「법」으로 약칭

○ 부칙은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폐지와 연계하여 개정조례의 시행일 2020년 1월 1일로 하고, 경과조치를 통해 폐지 조례의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관련 사항들을 이 조례로 대체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대구시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1일자로 산단 부서를 통합*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산단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부서 : 원스톱기업지원과, 산단재생과 ⇒ 산단진흥과(2019.1.1. 신설)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제출일자 : 2019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19년 7월 8일

2. 제안이유

-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재정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에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발췌하여 추가하고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문신설(안 제2조에서 제4조) : 용어의 정의, 회계의 세입 및 세출 규정에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조문 정비
- 조문변경(안 제1조, 제3조, 제4조)
 - 회계명칭 및 약칭을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로 변경
 - 사업 범위가 포함된 조문에 "재생"을 추가하여 문맥에 맞게 수정

○ 부칙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함
-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는 폐지

4. 검토의견

□ 개정취지

- 산업단지 관련 특별회계가 ‘구성 및 관리사업’과 ‘재생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재정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하려는 것임.

□ 적법성 여부

- 유사성격의 특별회계를 통합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17.10월 제정)의 ‘재생사업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이 조례로 이관(개정)하고 폐지함.

☞ 폐지조례의 ‘산단재생추진협의회’ 관련 규정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로 이관(개정)

□ 주요 검토사항

- 먼저, 산업단지 관련 특별회계 현황을 보면,
본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산업단지 구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와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2017년 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가 있으며,

- 지난해까지는 ‘원스톱기업지원과’와 ‘산단재생과’로 이원화하여 조례 및 특별회계를 운용하였으나 지난 1월 1일자 대구시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산업단지 관련 통합부서인 ‘산단진흥과’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음.

《 산업단지 관련 특별회계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산업단지재생	
단위사업명	예산액	단위사업명	예산액
계	35,100	계	9,200
산업단지 조성	7	노후산단 기반시설 정비	5,000
산업단지관리	28	예비비	4,200
산업단지 환경정비	458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옥상 방수공사 지원	50		
대구제3산업단지 재정자립화 사업 지원	350		
대구제3산업단지 절삭유 개선사업 지원	100		
대구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입	6,894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활동 지원	100		
예비비	27,059		
인력운영경비	54		

※ 2019년도 당초 세출예산 기준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의 제명을 개정 내용에 맞게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당초)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변경)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사용 용어의 정의에 ‘재생사업’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임.
- 안 제3조(세입) 및 안 제4조(세출)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을 통해 통합되는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재원과 세출용도¹⁾를 추가한 것임.
※ 「대구광역시 노후산단 재생 활성화 조례」 제4조(특별회계의 세입) 및 제5조(특별회계의 세출)를 이관
- 부칙으로
 - 안 제1조(시행일)는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하였으며, 이는 회계연도 중 회계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하려는 것이며,
 -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제2항은 세입 재원을 제3항은 세출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존속기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토록 함에 따른 것으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유사 성격의 산업단지 관련 특별회계를 통합해 운용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애 별다른 이견은 없음.

특히, 지난해까지는 산단의 관리사업과 재생사업이 분리되어 각각의 부서에서* 조례 및 특별회계를 운용해 왔으나 대구시 조직개편(2019.1.1.일자)에 따라 부서(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산업단지 관련 부서 현황(조직개편 전)

-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 일자리경제본부 원스톱기업지원과
- 산업단지재생 : 도시기반혁신본부 산단재생과

- 다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통합되는 '산단재생사업특별회계'의 금년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공금이자수입과 잉여금만 편성되어 있어 세입재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세출의 경우에도 주차장조성 1건(추경을 통해 감액 예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